

[별표 4] <개정 2008.2.29>

소득공제대상 지출별 자료집중기관(제216조의3제2항 관련)

소득공제대상 지출		자료집중기관
1. 제216조의3제1항제1호·제1호의2·제2호·제5호·제6호·제7호·및 제7호의3에 따른 지출액		전국은행연합회(생명보험회사의 자료는 「보험업법」 제175조에 따른 생명보험협회를, 손해보험회사의 자료는 「보험업법」 제175조에 따른 손해보험협회,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자료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62조에 따른 한국여신전문금융업협회를 각각 자료집중기관으로 한다)
2. 제216조의3제1항제3호에 따른 의료비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3. 제216조의3제1항제4호가목부터 다목까지 및 제4호의2에 따른 교육비	가.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또는 「고등교육법」·특별법에 따른 학교에 지급한 교육비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나.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 지급한 교육비	교육과학기술부
	다.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보육시설에 지급한 교육비	보건복지가족부
4. 제216조의3제1항제4호라목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 지급한 교육비		노동부